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32호 2018. 8. 17.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01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2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632호 삼척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이용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5
- 삼척시 공고 제638호 삼척시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10
- 삼척시 공고 제639호 삼척시의회(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 15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18 - 101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 08. 17.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마달길 111 (마달동) 외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  
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08. 1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  
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마달동 27-6, 27-2	강원도 삼척시 마달길 111 (마달동)	20180817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기존도로명)	
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398, 398-6, 398-7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노곡1길 132-2	20180817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행정구역명사용 (옥원노곡길분기)	
3		이	하	여	백		
4							
5							
6							
7							
8							
9							
10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개	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마달동 27-6, 27-2	강원도 삼척시 마달길 111 (마달동)	2	20180817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기초도로명)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398, 398-6, 398-7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노곡1길 132-2	2	20180817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행정구역명사용 (옥원노곡길분기)	

삼척시공고 제2018 - 632호

## 삼척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이용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삼척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이용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 삼 척 시 장

1. 자치법규명 : 삼척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이용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8. 8. 17. ~ 9. 5.(20일)
3. 제안이유
  - 대중교통 유지를 위한 지방재정부담 심화에도 불구하고 운수업계의 재정난 악화로 대중교통 이용 감소 및 서비스 저하의 악순환 지속
  - 대중교통 이용 소외지역 및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이동권 보장과 교통약자의 의료·문화·복지 접근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지원에 대하여 구체적·명시적으로 규정
4. 주요내용 : 재정지원사업의 대상을 구체적,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6조)
  -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안 제2조)
    -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수단(마을버스, 전세버스, 택시, 자가용 등)을 해당지역의 여건에 맞추어 기존 대중교통수단과 연계 또는 단독 운영
    - 스쿨택시란 관내 학교로부터 반경 1,000m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의 등·하교를 지원

-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수단의 운영방법 규정(안 제3조)
  -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
  - 대중교통의 요금범위 내에서 일부 자부담, 그 외 비용 지원
- 비용의 신청과 지원절차(안 제4조, 제5조)

5. 의견제출 : 삼척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이용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 【참조 : 교통행정과,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전화 : 033-570-3939 팩스 : 033-570-31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삼척시 홈페이지 (<http://www.samcheok.go.kr/>)의 시정계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삼척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이용 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

**【붙임 1】**

**삼척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이용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을 활용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시내버스 미운행 및 이용불편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운행구간, 정류장 등이 탄력적으로 운행되는 여객운송 서비스를 말한다.
2.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수단은 마을버스, 전세버스, 택시, 자가용 등이며,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 기존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 또는 단독으로 활용한다.
3. “스쿨택시”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관내 학교에서 반경 1,000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 등·하교 시 탑승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을 말한다.

제3조(운영방법) ①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탑승 대상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한다.
- ③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주민은 탑승 시 발생하는 요금 중 일부를 부담하고, 시장은 그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주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시내버스 요금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 ④ 스쿨택시의 탑승을 희망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의 신청) ①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운행일지를 근거로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에 따라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교통카드 및 전산시스템이 적용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시장이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탑승비용을 지원한다.
- ③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6조(사후관리) 시장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이용 현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행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도로 및 교통 환경변화 등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교복비 지원근거 (안제4조)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비 지원 가능
- 교복비 지원대상, 금액, 방법 (안제5조~제7조)
  - (대상) 중·고등학생 중 신입생 및 전학생, 지원횟수는 1회
  - (금액) 해마다 예산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함, 단 타기관의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분담비율 및 지원금액 등을 협의할 수 있음
  - (방법)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일괄지원, 단 고등학교는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지원할 수 있음. 또한 법령, 조례, 학부모가 직장 등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보조금신청액에서 감액할 수 있음. 그 밖의 신청 및 지급관련 절차는 「삼척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름.
- 중복수혜시 반납규정 (안제8조)
  - 제정조례안 제7조제1항각호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
- 시행규칙 (안제9조)
  -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9월 3일까지 삼척시장(참조 : 평생교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이메일) : heraclass20@korea.com
- 2)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청석로3길 16-41
- 3) 팩스 : 033-572-202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평생교육과(전화 : 033-570-44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삼척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 호

### 삼척시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27조에 따라 삼척시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중·고등학생의 교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고등학생”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 소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
2. “교복”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정한 재학생이 입는 복장을 말한다.
3. “교복 물려주기”는 졸업생이 후배 학생에게 자신의 교복을 기증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중·고등학교장은 환경보전, 물자절약 등 친환경 교육의 실천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교복 물려주기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복비 지원) 시장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중·고등학생의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교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교복비 지원대상은 중·고등학생 중 신입생 및 전학생으로 하되, 지원횟수는 1회로 한다.

제6조(지원금액) 교복비 지원금은 해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강원도교육청 등 타기관의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분담비율 및 지원금액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중·고등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일괄 지원하되, 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직접지원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타 조례에 따라 교복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에서 교복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② 그 밖의 교육비 보조금 신청 및 지급관련 절차는 「삼척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반납) 교육장 및 해당 학교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공고 제2018-639호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제20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14.

삼척시장

### 제20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 동의안 : 3건

1. 삼척 SOS통통센터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공립 호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조례안 : 4건

1. 삼척시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조례안
2. 삼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삼척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